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1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이용우 · 박민규 · 민병덕

김 윤 · 이주희 · 박지혜

박정현 · 임미애 · 백승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
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
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
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
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
의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
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
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제5항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대피한 근로자”를 “대피한 근로자,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

④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한다.

⑤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52조제6항, 제6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u>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u>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u>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한다.</u>
<u><신설></u>	⑤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u>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안전 및 보건</u>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

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피한 근로자,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69조(벌칙) -----

-----.

1. -----제52조제6항, 제63조-----

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 ----- ----- ----- ----- 2. ~ 6. (현행과 같음)
--	--